2005년 11월 17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노동부 Ministry of Labor

보 도 자 료

▶ 고용보험정책팀 이수종사무관
T E L : 503-9750
E-MAIL : sjrhy2002@hotmail.com
F A X : 502-2714

▶ 2005. 11. 16 배포
▶ 총 7 쪽 (사진없음)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lab.go.kr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
고 용 보 험 제 도 대 폭 개 편

□ '06.1월부터 고용보험의 지원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.

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'05.11.16 국회를 통과하여 '06.1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.

○ **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**를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하고, **65세 이상자, 영세 자영업자**도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여 직업훈련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(실업급여 등은 제외)

- 그간 고용보험은 피보험자 등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**대학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신규 구직자**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되며

  ※ 대학취업지원실 지원 등

- 종래 고용보험의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던 **65세 이상자의 계속 취업을 지원**하고, **영세 자영업자**가 임금근로자로 전직하기 위하여 **직업훈련**을 받을 경우 이에 **소요된 비용을 지원**받을 수 있게 된다.

○ **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**이 대폭 **확대 · 강화**된다.

-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**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· 운영**함으로써 훈련과 고용이 연계되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

  ※ 취업알선 · 훈련 · 고용안정지원금간 상호 연계, 고용안정 · 훈련의 원스톱서비스 제공, 지역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

- 또한, 다양화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**고용환경 개선, 근무형태 변경** 등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

- 연공급 임금체계 및 직무체계의 개편 등을 위한 **고용관리 진단 등 사업주의 고용개선 노력을 지원**할 수 있게 된다.

- 한편,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던 고용안정 지원금을 **근로자에게도 직접 지원하도록 개정됨으로써**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 위주의 제도 운영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**신속한 재취업 지원 중심**으로 바뀐다.

- **실업자 특성 및 실업기간**을 고려하여 **개인별 재취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**하는 등 고용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보다 신속한 재취업이 기대된다.

- 아울러,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에 **2주마다** 출석하는데, 앞으로는 실업자의 취업능력 등에 따라 **1주 내지 4주 범위**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정된 일자에 출석하면 된다.

○ 이외에도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**이직확인서 제출을 면제**하고, 실업급여 등 **부정행위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**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.

<고용보험법 주요 개정 내용>

1.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

□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·운영
(제5조의2제2항, 제15조 및 제70조제2항)

○ 사업의 명칭·보험료율·기금계정을 현행 「고용안정사업」 및 「직업능력개발사업」에서 「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」으로 통합·운영함으로써

- 훈련과 고용을 연계하여 사업의 Synergy효과를 높이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

○ 아울러, **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고용안정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함**으로써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안정성 제고 가능

○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▲고용안정사업 ▲직업능력개발사업 ▲고용복지사업 등으로 사업명칭은 나뉘어져 있으나, 보험료율 및 계정은 통합 운영되고 있음

□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대
(제8조 단서, 제15조제1항)

○ 지원대상에 "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"까지 포함하여 청년층에 대한 채용전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기실업 예방

- "65세 이상자"를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계속 취업을 지원

※ 64세 이후부터는 보험료 면제(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)

□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·강화

(제15조, 제15조의2, 제18조의3 및 제26조의4)

○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불황 등 경기적(景氣的) 요건을 삭제,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인력수급 불일치 등에 대응하도록 함

○ 아울러, 다양화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지원사업을 확대

- 고용환경개선,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

- 고용관리진단 등 고용개선지원사업,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평가사업 및 자격검정사업 근거 마련

□ 근로자에게 지원금 직접지원(제18조)

○ 고용관계의 결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므로

- 근로자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※ 종래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

○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주체(사업주)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 직접지원 하고 있으며

○ 독일의 경우 파산수당, 조업단축수당, 구직활동보조금 등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있음

□ 자영업자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임의적용 (제83조의2)

○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여 임금근로자로 전직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 제공

※ 가입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하고 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임금으로 징수(보험료징수법 개정)

- 과잉공급된 자영업자는 근로자로 공급될 잠재인력이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진입 지원이 필요

- 또한 이는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에 해당

※ 자영업자는 보험료 산정, 피보험자관리, 보험사고의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에 비용부담 및 수혜의 측면에서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동일 구조로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

※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7,786천명(취업자 중 34.5%)이고 영·미 등 국가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큰 실정 <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: 미국(7.2%), 독일(10.0%), 영국(11.4%), 일본(15.9%)>

2. 고용보험 수혜의 질 제고 및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

□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개선(제13조제2항·제4항·제5항)

○ 건설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·상실 신고를 전자카드로 제출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

□ 이직확인서 제출제도 개선(제13조의2제1항 및 제14조)

○ 이직확인서는 임금지급, 이직사유 등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면제

※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 필요

※ '04.1.1~10.30 기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건수 2,842천건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건수 386천건으로 상실건수의 약 13.6%이고, 기타 86%는 직장을 이동하는 등 수급자격과 관계없는 노동이동임

□ 실업인정제도 개선(제34조제3항 및 제5항)

○ 일률적으로 2주에 1회씩 실업인정을 하는 현행 방식은 재취업활동에 대한 개별·구체적 확인이 어렵고,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유발하는 등 실업인정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

○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지원, 직업소개 등 조치를 취하여 실업인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되

- 실업인정기간은 1주~4주의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별로 지정

○ 외국의 실업인정주기

- 일본 : 4주, 영국 : 2주, 스웨덴 : 4주, 미국 : 1~2주

□ 부정수급신고자 포상제 도입(제83조)

○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예방 및 조치가 어렵고,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

- 이법에 의한 지원금, 실업급여 등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제도 도입

<제보자 포상제도 사례>

- 장애인고용법 제26조의3(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포상)
-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(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)
- 식품위생법 제71조의2(식품위생법 위반신고 포상)
- 국세기본법 제84조의2(조세탈루의 환수 자료제공자 포상)

□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연장 등 개선
(제55조의2제1항3호 및 제55조의4제1항)

○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 "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6월 이내"를 "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"로 연장하여 민원편의 도모

- 육아휴직 중 취업신고 대상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 "18시간 이상" 에서 "15시간 이상" 근로로 개정하여 적용범위와 일치시킴

※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기한 6월은 고용보험법(법률 제7565호, '05.5.31) 개정으로 12월로 연장

※ 적용범위 조항 개정('04.1.1)으로 "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자"는 고용보험법 당연적용